

# 구미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구 미 시

# 구미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6. 1. .  
제출자 : 구미시장

## 1. 제안 이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2의 규정에 따라 비시가화지역 중 체계적,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필요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위치: 구미시 비시가화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나. 면적: 약 65.44km<sup>2</sup>

다. 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에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이 2026년부터 시행 예정에 있어,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  |
|--|
| ① 공장, ②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등(바닥면적 500m <sup>2</sup> 미만)<br>③ 판매시설(바닥면적 3천m <sup>2</sup> 미만) |
|--|

라. 성장관리계획 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

(1) 성장관리계획구역(안)

구분	성장관리계획구역									
	계		일반형		유도형					
	면적 (km <sup>2</sup> )	구역 수 (개소)	면적 (km <sup>2</sup> )	구역 수 (개소)	소계		산업형		근린형	
					면적 (km <sup>2</sup> )	구역 수 (개소)	면적 (km <sup>2</sup> )	구역 수 (개소)	면적 (km <sup>2</sup> )	구역 수 (개소)
합계	52.15	280	50.96	257	1.19	23	1.12	20	0.07	3

(2)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별 행위 제한

- 일반형: 입지구제 최소화(현 계획관리지역 건축물 허용용도와 동일)
- 유도형(산업형): 공장 집적화(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불가)
- 유도형(근린형): 상업용도 집적화(공장, 도축장 등 불가)

3. 부서 의견

- 법령 개정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이 입지 가능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 활동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4.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

- 가. 2025. 12 ~ 2026. 1월 :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12.29 ~ 1.19)
- 나. 2026. 1월 : 시의회 의견청취
- 다. 2026. 1월 :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라. 2026. 2월 : 구미시 고시

5.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나. 성장관리계획(안) 주요 내용: 붙임

# 구미시 성장관리계획(안) 주요 내용

## □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 1. 성장관리계획구역 설정 절차

- 지역 특성에 맞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구역 지정 기준(안)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구역지정 대상지 선정	계획관리지역(전체)		
1단계 (개발가능지 분석)	1. 공적규제지역 제척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등)	2. 기계획지역 제척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3. 개발규제지역 제척 (경사 25도 이상)
2단계 (구역 정형화)	1. 소규모 계획관리지역 제척	2. 세장형 지역 제척 (폭 20m 미만)	3. 선형시설 고려 제척 및 포함
	4. 지적선을 기준으로 경계 설정	5.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구역 정형화	6. 도시기능상 계획적 관리 필요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 2.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 구분

- 유도형 구역은 입지 여건, 토지이용 현황과 건축물 용도 현황 등을 분석하여 구역을 산업형, 근린형 등으로 세분

구분	특징	기준
일반형	• 입지규제(불허용도) 최소화	• 유도형이 아닌 구역
유도형	산업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개발지목<sup>1)</sup>의 면적이 50% 이상이고, 동일 용도<sup>2)</sup>의 건축물 수가 50% 이상인 구역</li> <li>• 주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건축물의 용도관리가 필요한 구역</li> </ul>
	근린형	

주1) 개발지목(10개): 대(垔) · 공장용지 · 학교용지 · 주차장 · 주유소용지 · 창고용지 · 체육용지 · 유원지 · 종교용지 · 잡종지

주2) 건축물 용도 분류는 국가통계포털(KOSIS) 용도별 건축물 분류를 기반으로 구미시 성장관리계획 성격에 맞춰 재분류하여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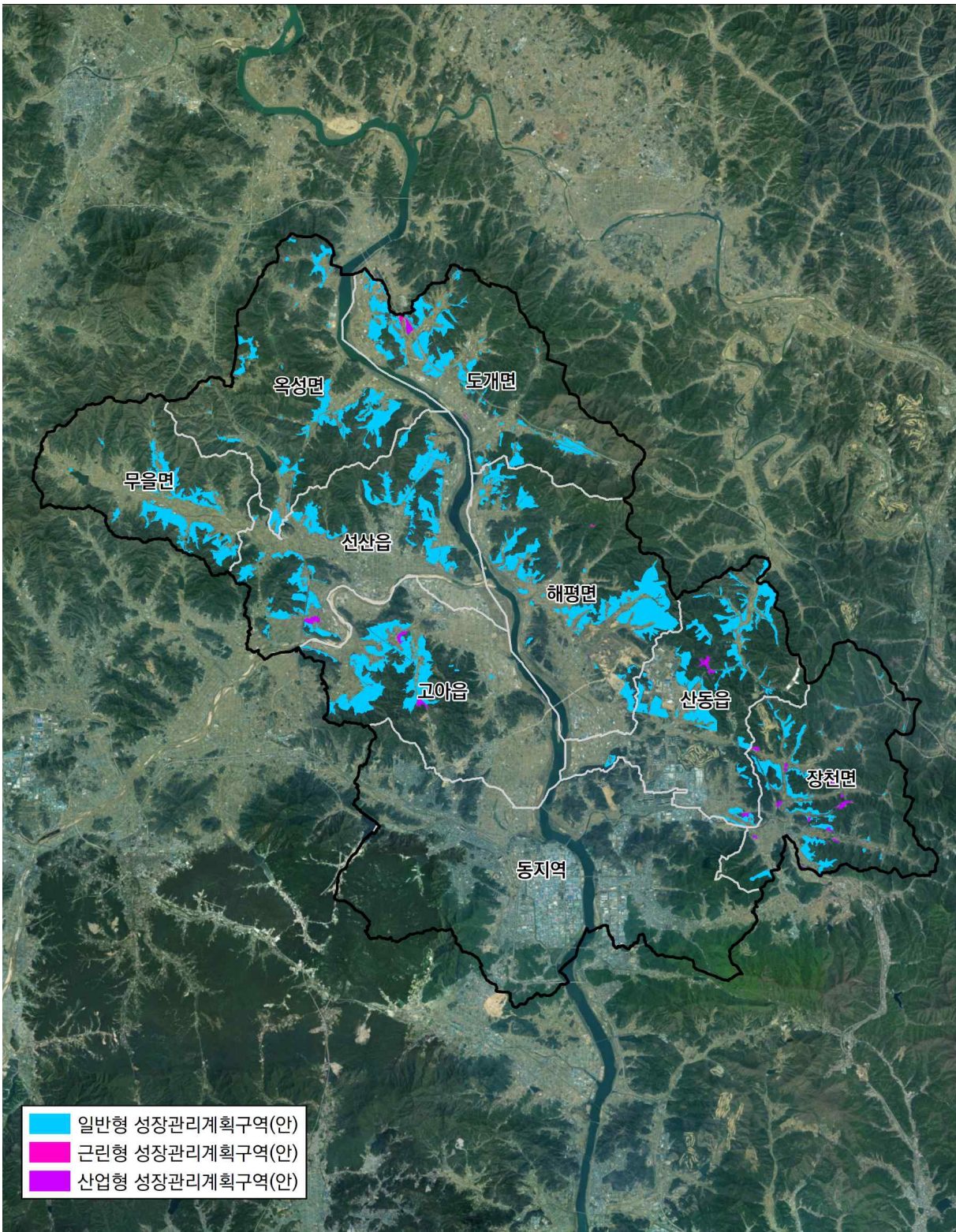
- 주거용: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 3. 성장관리계획구역(안)

#### 가. 총괄표

구분	계획 관리 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안)									
		합계		일반형		유도형					
						소계		산업형		근린형	
		면적 (km <sup>2</sup> )	구역 수 (개소)	면적 (km <sup>2</sup> )	구역 수 (개소)	면적 (km <sup>2</sup> )	구역 수 (개소)	면적 (km <sup>2</sup> )	구역 수 (개소)	면적 (km <sup>2</sup> )	구역 수 (개소)
소계	65.44	52.15	280	50.96	257	1.19	23	1.12	20	0.07	3
선산읍	10.33	8.24	37	8.10	36	0.14	1	0.14	1	-	-
고아읍	7.36	6.67	18	6.49	16	0.18	2	0.18	2	-	-
산동읍	9.52	7.59	46	7.37	43	0.22	3	0.22	3	-	-
무을면	5.77	4.80	14	4.80	14	-	-	-	-	-	-
옥성면	7.92	5.26	35	5.26	35	-	-	-	-	-	-
도개면	8.81	6.66	52	6.48	49	0.18	3	0.12	1	0.06	2
해평면	9.88	9.23	35	9.22	33	0.01	2	0.00	1	0.01	1
장천면	5.85	3.70	43	3.24	31	0.46	12	0.46	12	-	-

나. 총괄도



## □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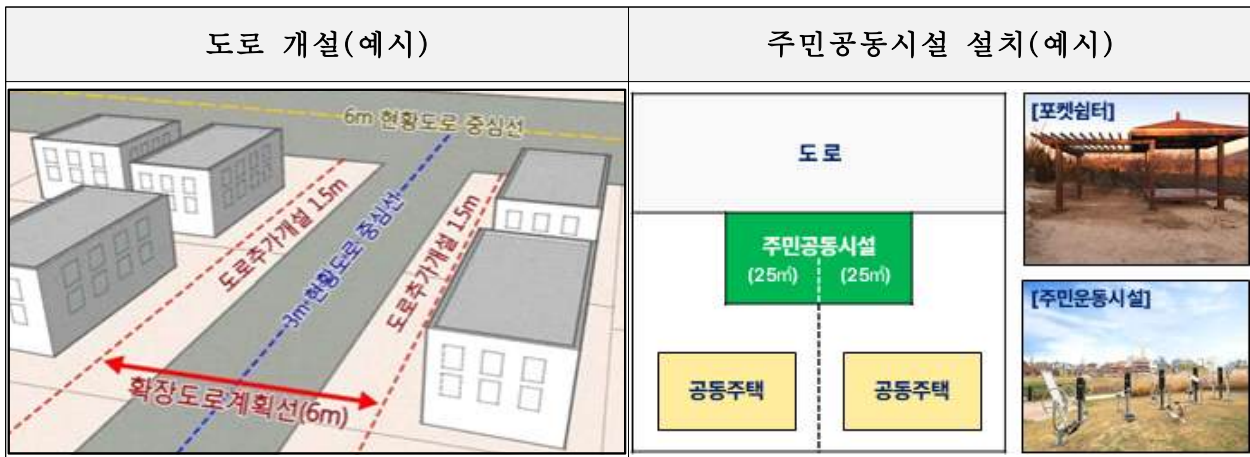
### 1.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권장 사항)

#### 가. 도로 개설

-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등을 준용하여 개발규모 등에 부합하는 도로폭으로 개설하되, 현행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확폭하여 최소 6m 이상의 폭원 확보 권장
- 개설된 도로는 해당 행정청에게 기부채납 권장

#### 나. 주민공동시설 설치

-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도로와 접한 대지 내 일부 공간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시설 등 설치 권장
- 주민공동시설의 최소 규모는 25㎡ 이상으로 하며, 인접 필지와 연계하여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 건축물 용도 계획에 관한 사항(의무 사항)

- 건축물의 용도는 권장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로 구분하여 계획 수립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축물 용도 현황 및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이질적인 용도의 건축물 입지 제한

### 가. 일반형 성장관리계획구역

구분		건축물 용도
일반형	권장용도	-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구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당해 용도지역 내 허용 건축물(단, 불허용도 제외)</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 상기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분류임

### 나. 산업형 성장관리계획구역

구분		건축물 용도
산업형	권장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라목 기숙사</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 산업전시장</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li> </ul>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제33조(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건축용도 중 불허용도 외 용도</li> </ul>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나목 연립주택, 다목 다세대주택</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 축사, 나목 가축시설, 다목 도축장, 라목 도계장</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li> </ul>

※ 상기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분류임

※ 불허용도 중 지자체 또는 산하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허용

다. 근린형 성장관리계획구역

구분		건축물 용도
근 린 형	권장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너목 제조업소, 수리점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li> </ul>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및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제33조(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건축용도 중 불허용도 외 용도</li> </ul>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단, 도정공장, 식품공장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단, 가목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나목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사목 도료류 판매소 제외)</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다목 도축장, 라목 도계장</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li> </ul>

※ 상기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분류임

※ 불허용도 중 지자체 또는 산하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허용

### 3. 건폐율 및 용적률(인센티브) 계획에 관한 사항(의무 사항)

○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을 준용하여 기준건폐율·용적률에서 인센티브 항목을 충족할 경우 상한건폐율·용적률 범위 내에서 완화

#### 가. 건폐율·용적률 상한의 범위

구분	건폐율(%)		용적률(%)		비고
	기준	상한	기준	상한	
계획관리지역	40	50	100	125	-

#### 나. 건폐율 인센티브 항목 및 완화 내용

구분	완화 항목	완화 건폐율	비고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기반시설계획	도로 개설	기준 건폐율 $\times(\text{도로개설 면적/대지 면적})\times 1.5$	권장 사항
		주민공동시설 확보	기준 건폐율 $\times(\text{주민공동시설 면적/대지 면적})\times 1.5$	권장 사항
	건축물 용도계획	권장용도	3%	권장 사항
	건축물 주차시설 계획	주차대수 확보 (법정 기준 대비 100% 이상)	3%	권장 사항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전면공지	기준 건폐율 $\times(\text{전면공지 면적/대지 면적})\times 0.5$	권장 사항

- ※ 주: 1. 상한 건폐율  $\geq$  기준 건폐율 + 건폐율 완화적용의 합계  
 2. 대지면적은 기반시설 확보 전 면적을 적용  
 3. 법, 조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및 건축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도로,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산정 면적에서 제외(단, 기부채납 면적은 포함)

#### 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완화 내용

구분	완화 항목	완화 용적률	비고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기반시설계획	도로개설	기준 용적률 $\times(\text{도로개설 면적/대지 면적})\times 1.5$	권장 사항
		주민공동시설 확보	기준 용적률 $\times(\text{주민공동시설 면적/대지 면적})\times 1.5$	권장 사항
	건축물 용도계획	권장용도	6%	권장 사항
	건축물 주차시설 계획	주차대수 확보 (법정 기준 대비 100% 이상)	6%	권장 사항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전면공지	기준 용적률 $\times(\text{전면공지 면적/대지 면적})\times 0.5$	권장 사항

- ※ 주: 1. 상한 건폐율  $\geq$  기준 건폐율 + 건폐율 완화적용의 합계  
 2. 대지면적은 기반시설 확보 전 면적을 적용  
 3. 법, 조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및 건축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도로,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산정 면적에서 제외(단, 기부채납 면적은 포함)

#### 4. 건축물 배치·색채·높이·주차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의무·권장사항)

구분	내용	비고
건축물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방향은 가급적 도로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하여 가로경관의 통일감 및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권장</li> </ul>	권장
건축물의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과 조화로운 색채를 사용하도록 권장</li> </ul>	권장
건축물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높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의한 높이를 기준으로 함</li> <li>※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계획관리지역: 4층 이하)</li> <li>※ 개별법에 의해 허가 및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li> </ul>	의무
주차시설 추가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원활한 주차를 위해 주차시설 추가 확보 권장</li> <li>• 주차대수 추가 확보는 법정주차대수 또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권장주차대수 중 많은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100% 이상 확보하는 것을 권장</li> </ul>	권장

# 관계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3.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5.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의회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⑥ 그 밖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3.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및 높이
4.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5.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제7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

③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절차는 제7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성장관리계획”으로 본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 내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성장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법 제7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인구 감소 또는 경제성장 정체 등으로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
2. 공장 등과 입지 분리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제70조의1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성장관리계획구역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성장관리계획구역안에 반영할 것

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및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이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⑦ 법 제75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성장관리계획구역을 변경하는 부분에 둘 이상의 읍·면 또는 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읍·면 또는 동 단위로 구분된 지역의 면적을 각각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성장관리계획구역 면적의 일부를 변경(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함께 결정하는 경우. 다만,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

⑧ 법 제75조의2제5항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고시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목적

2.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위치 및 경계

3.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 및 규모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소 관 부 서		도시계획과
입 안 자	과 장	김 현 호
	팀 장	이 재 학
	담 당 자	이 경 민 (480-5402)